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11월 30일
- 회부일자 : 2000년 11월 30일

다. 제안이유

-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제정(대통령령 제16767호, 2000.3.28)됨에 따라
-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도 조례를 정비하여,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라. 주요골자

- 위임 사무의 근거법령 조항 정비 : 3개 사무
 - 보상금액의 산정 (안전관리과)
 - 보상금 지급의 통지(안전관리과)
 -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(안전관리과)
-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삭제 : 1개 사무

- 소유권 이전등기(안전관리과)

마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하천법에 규정한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
편입토지 보상에 관련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
-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,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평가의뢰
하도록한 강제규정과

- 보상금 지급의 통지시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통지는
특별조치법 제9조에서 제8조로,

-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시 편입 토지의 소유자가
토지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
거부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2호를
제33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

이를 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
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, 사무위임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
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